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자율안전확인제도」가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전기 배선용 차단기 인증대상 여부

배선용차단기 2차 측에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상시/비상 자동절체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성할 경우 이 배선용차단기를 기존의 케이스가 있는 완제품이 아닌 회로로만 구성된 제품에 상시/비상 자동절체기를 조합하여 하나의 케이스로 구성할 경우 해당되는 안전인증 또는 적용가능 여부는?

또한 가정용 배선차단기(ELB, MCCB)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에 케이스를 제거하여 다른 절체회로를 조합해서 재조립 및 다른 케이스로 변형을 할 경우 가능 여부 또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지?

Answer 문의하신 배선용 차단기 2차 측에 절체회로를 조합하여 조립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음

Question **접지극이 없는 콘센트 생산가능 여부**

KS 콘센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KS제품은 접지극이 있는 구조의 제품만 규정되어 있어 무접지 콘센트의 규정이 바뀐 후로는 일체 생산하지는 않고 있음. 만약 소비자 요구시 안전인증 제품으로 접지극이 없는 콘센트의 생산이 가능한지?

Answer 콘센트 및 플러그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인 K60884-1(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9.1항에서 콘센트는 표준규격(KS C 8305)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무접지형 콘센트는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생산이 불가능함.

Question **멀티콘센트에 상호연결 커플러가 부착된 제품 안전인증대상 여부**

가구, 파티션 등에 부착사용을 위해 전원코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멀티콘센트에 상호연결커플러를 부착한 구조의 제품의 안전인증이 가능한지?

Answer 상호연결커플러가 부착된 멀티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되나 동제품의 구조가 멀티콘센트를 무한정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임.

Question **감전보호기 안전인증대상 여부**

입력과 출력을 연결시키고 전자부품을 이용하여 누전을 감지하여 릴레이 A 접점을 이용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의 감전보호기(Earth Leakage Detetor Controller)를 제조하여 가로등 등에 설치하려고 함. 감전감지 차단회로, 복귀회로, 시험회로, LED 표시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감전보호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Answer 누전감지식 감전보호기(전자식 자동복귀형)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보호용부품에 해당되지 않음.